

##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관리 규정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, 분석 및 지속적 개선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교육수요자”란 본교로부터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로서 학생, 학부모, 동문, 산업체 및 지역사회 등 본교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를 말한다.
2. “교육수요자 만족도”란 본교가 제공하는 유형, 무형의 각종 교육 및 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를 일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표현하는 지수를 말한다.

**제3조 (조사의 목적 및 내용)**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대학 교육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조사내용은 교수-학습, 교육과정, 교육환경, 대학행정, 대학 생활 등 교육 전반에 걸쳐 시행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특정 범위에 한해 조사할 수 있다.

**제4조 (조사 시기)**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연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.

**제5조 (주관 부서)**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관리를 총괄하는 주관 부서는 학생IR센터로 하며, 담당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 2023.2.6.)

1. 교육수요자 만족도 향상 활동의 기본방침 및 계획 수립
2.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의 분석 및 평가
3.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 확정 및 사후관리
4.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분석보고서 작성 후 중장기발전계획 근거 자료 제공
5.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관리 위원회 운영

**제6조 (실행 및 관계 부서)** ①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실행은 조사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다.

1. 학사팀: 재학생 만족도 조사
2. 기획팀: 교직원 만족도 조사, 지역사회 만족도 조사
3. 산학협력단: 산업체 만족도 조사
4. 취업팀: 졸업생 만족도 조사
5. 국제협력원: 유학생 만족도 조사

②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관계 부서는 본교의 모든 부서 및 학과(부)로 하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만족도 조사 및 평가 지원
2.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

**제7조 (위원회의 구성)** ①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계획 수립과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학생IR센터 산하에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관리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운영한다.(개정 2023.2.6.)

② 위원장은 학생IR센터장으로 한다.(개정 2023.2.6.)

③ 실행부서장 또는 팀장, 학생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1인의 간사를 둔다.(개정 2023.2.6.)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관리 계획 심의
2. 교육과정 및 행정서비스 개선 계획 확인
3. 교육수요자 만족도 개선 계획에 따른 개선 실적 확인 및 결과분석보고서 검토

**제8조 (조사계획의 수립)** ① 주관 부서는 실행 부서와 협의하여 매년 초 조사계획을 수립하고, 위원회

의 검토 후 확정한다.

② 조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1. 조사의 목적 및 적용범위
2. 조사 대상
3. 조사 시기 및 일정
4. 조사 방법
5. 조사 항목
6. 그 밖의 필요한 사항

**제9조 (조사의 시행 및 결과분석)** ① 주관 및 시행부서는 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한다.

② 설문조사 실시 전에 사전 공고를 하며 설문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.

③ 주관부서는 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.

④ 주관 부서는 결과분석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.

**제10조 (보고서의 검토 및 공개)** ① 위원회는 행정서비스 및 교육과정 개선 결과분석보고서를 검토한 후 교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.

② 위원회는 결과를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교무위원회에 보고한다..(개정 2023.2.6.)

**제11조 (사후 관리)** ① 주관 부서장은 조사결과와 위원회의 검토결과에 따라 관계 부서에 개선을 요청한다.

② 관계 부서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개선활동 결과를 주관 부서에 제출한다.

③ 주관 부서장은 매년 관련 부서의 개선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.

④ <삭제 2023.2.6.>

⑤ 조사결과는 대학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자료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(신설 2023.2.6.)

**제12조 (세부사항)**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2.6.)

①(시행일)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